|  |  |  |
| --- | --- | --- |
|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5호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의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2018]76호, 이하 '<통지>'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통지> 제1조에서 당해 연도에 고신기술기업 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이하 '자격'으로 통칭)을 구비한 기업이 자격 확보 연도 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자격을 구비한 기업이 그 전 5개 연도에 자격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을 지칭한다.  2018년에 자격을 구비한 기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자격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을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보전이 가능하며 최장 이월연한은 10년이다. 2018년 이후 연도에 자격을 구비한 기업은 이에 따라 유추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관한 세무처리를 한다.  고신기술기업은 그가 취득한 고신기술기업증서상에 기재된 유효기간 소속연도에 따라 그의 자격 구비 연도를 확정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그가 취득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입고등기번호에 명시된 연도에 따라 그의 자격 구비 연도를 확정한다.  특수세무처리규정에 부합되는 합병 또는 분할 등 구조조정 사항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그의 미보전 결손금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9호)와 이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  합병기업이 승계받은 피합병기업의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연한은 피합병기업의 결솜금 이월연한에 따라 확정한다.  분할기업이 승계받은 피분할기업의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연한은 피분할기업의 결손금 이월연한에 따라 확정한다.  합병기업 또는 분할기업이 자격을 구비한 경우 그가 승계받은 피합병기업 또는 피분할기업의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연한은 <통지> 제1조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통지>와 이 공고에 규정한 결손금 이월·보전연한 연장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예납 및 연말정산 시 자율적으로 결손금 이월·보전연한을 계산하여 관련 납세신고표를 작성한다.  이 공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8월 23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延长高新技术企业和科技型中小企业亏损结转弥补年限有关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45号  　　为支持高新技术企业和科技型中小企业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长高新技术企业和科技型中小企业亏损结转年限的通知》（财税〔2018〕76号，以下简称《通知》）规定，现就延长高新技术企业和科技型中小企业亏损结转弥补年限有关企业所得税处理问题公告如下：  　　一、《通知》第一条所称当年具备高新技术企业或科技型中小企业资格（以下统称“资格”）的企业，其具备资格年度之前5个年度发生的尚未弥补完的亏损，是指当年具备资格的企业，其前5个年度无论是否具备资格，所发生的尚未弥补完的亏损。  　　2018年具备资格的企业，无论2013年至2017年是否具备资格，其2013年至2017年发生的尚未弥补完的亏损，均准予结转以后年度弥补，最长结转年限为10年。2018年以后年度具备资格的企业，依此类推，进行亏损结转弥补税务处理。  　　二、高新技术企业按照其取得的高新技术企业证书注明的有效期所属年度，确定其具备资格的年度。  　　科技型中小企业按照其取得的科技型中小企业入库登记编号注明的年度，确定其具备资格的年度。  　　三、企业发生符合特殊性税务处理规定的合并或分立重组事项的，其尚未弥补完的亏损，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59号）和本公告有关规定进行税务处理：  　　（一）合并企业承继被合并企业尚未弥补完的亏损的结转年限，按照被合并企业的亏损结转年限确定；  　　（二）分立企业承继被分立企业尚未弥补完的亏损的结转年限，按照被分立企业的亏损结转年限确定；  　　（三）合并企业或分立企业具备资格的，其承继被合并企业或被分立企业尚未弥补完的亏损的结转年限，按照《通知》第一条和本公告第一条规定处理。  　　四、符合《通知》和本公告规定延长亏损结转弥补年限条件的企业，在企业所得税预缴和汇算清缴时，自行计算亏损结转弥补年限，并填写相关纳税申报表。  　　五、本公告自2018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8月23日 |